

안심하고 (예술/창작) 작업할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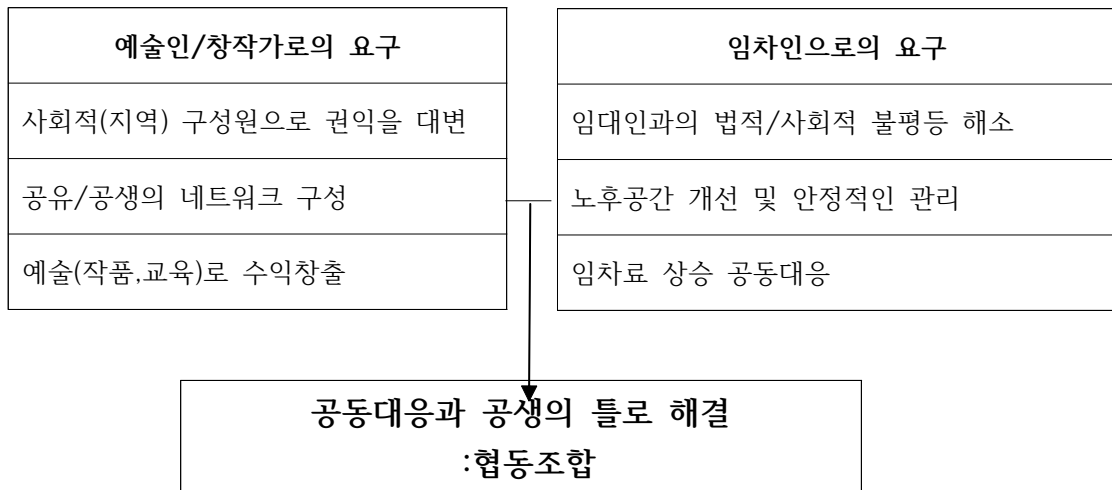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대응)으로 예술/창작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 지속해가기 위한 예술인임차인 협동조합 (이후 협동조합구성시 이름변경)을 제안합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_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2.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3. 조합원의 자본, 노동의 참여로 사업을 합니다. (출자금의 의무, 잉여금의 결정)
4. 타 조직의 영향에도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5. 조합원의 역할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동조합 구성시 예상되는 효과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선후조정)

- (1) 임차인 : 임대인의 개별 계약관계에서 협동조합(예술가/창작가) : 임대인의 관계로 변경하여 (계약변경의 조건이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임차인에 한해) 협동조합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법률대리)하여 임대차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안심하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자연스럽게 임차료 상승을 억제한다.
- (2)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질 신규기획공간(2~3개)을 운영 관리하여 조합

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신규 유입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예술다양성 촉진)

- (3) 시설공사, 개선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여 각 공간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
- (4) 조합원간 정기적인 예술적인 교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공간,기계,도구,재료를 네트워크화 하고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기획과 진행을 위한 모임을 구성한다.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 (1)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예술인,창작가이자 임차인 누구나 조합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 (2) 조합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냅니다.
- (3) 조합원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해 재능 및 노동을 제공합니다.
- (4) 조합원의 역할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 (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예술인안심창작공간 코-스페이스(이하 코스페이스):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중 기획사업으로 문래동(문래창작촌) 공간안정화(임차권리 강화,젠트리피케이션방지)를 목적으로 신규기획공간 확보, 기존공간지원 공모기획 및 진행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고 조합설립후 해산될 예정입니다.